

유전자 도입 자원식물 개발 연구 및 이용시 바이오안전성 확보 관리

최경화*, 김용호, 고강석, 오경희

국립환경과학원 자연생태부 유해생물과

*Tel: 032-560-7485, E-mail: choi978@me.go.kr

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」을 제정하였고 연구자들이 유전자를 도입하여 유전자변형 자원식물을 개발하고 이용할 경우에 법적 인 관련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자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 유전자변형 자원식물 개발 연구와 이용 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해야 할 법적 준수사항들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이해를 돋고자 하였다.

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」의 규정에 의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(개발, 생산, 수입, 수출, 판매, 운반, 보관 등) 연구와 이용 시 적용되는 사항은 수입·생산 관련 승인 및 취소 사항, 위해성 평가 및 심사관련 사항, 폐기처분 관련 사항, 연구시설 설치·운영 허가와 신고 관련 사항, 표시 및 취급관리 관련 사항, 정보 보호 및 이용관련 사항, 관리·운영기록의 보존 관련 사항,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관련 사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. 우편물을 포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, 종류, 특성, 용도,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.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 하려는 자는 허가받거나 신고 된 시설에서 개발 또는 실험을 수행해야 하고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는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.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개발·생산·수입 관리대장, 운반 관리대장, 보관 관리대장, 연구시설 관리·운영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만 한다.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·개발하는 대학, 연구기관의 관련자들은 법 이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. 또한 정부 부처는 연구자의 연구 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과 안전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.